

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-217호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5월6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가 필요하여,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추가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

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

책과

○ 전화 : 043-719-2254, 팩스 : 043-719-2250

○ 전자우편 : psyseong@korea.go.kr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 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통령령 제 호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마
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차. 치킨류(즉석섭취식품, 즉석조리식품, 식육함유가공품, 양념육 및
분쇄가공육제품 중 닭을 주원료로 하여 튀기거나 구운 식품)
- 라. 치킨(닭을 주원료로 하여 튀기거나 구운 식품)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